

예산총칙

2020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96,579,376	17,897,381
일반회계	565,723,380	16,971,701
특별회계	30,855,996	925,680
기타특별회계	30,855,996	925,68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098,604	32,958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1,332,357	39,971
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1,795,000	53,850
주차장특별회계	5,608,802	168,264
수질개선특별회계	21,021,233	630,637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 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 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897,611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7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회계년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특별조정교부금(교부세), 인센티브 재정보전금, 특정목적기부금, 외부기관 특정목적 전입금 및 포상금은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.